

인천광역시서해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hae.go.kr>

선

기관의장

람

제2035호

2026. 10. 14.(수)

차 례

공 고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89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92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93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5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94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2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95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35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96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51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2089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14.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 제안이유

- 구정소식지의 새로운 제호를 주민 공모 및 선호도 조사와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해담음」으로 선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구정소식지의 제호를 변경하여 조례상 제호를 일치시키고 구정소식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종전의 구정소식지 제호인 「Green 서해구」를 「서해담음」으로 변경(안 제8조)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참조: 홍보정책과, 전화 560-4142, 팩스 560-2709, 이메일 seoguksj8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구정소식지의 새로운 제호를 주민 공모 및 선호도 조사와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해담음」으로 선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구정소식지의 제호를 변경하여 조례상 제호를 일치시키고 구정소식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중전의 구정소식지 제호인 「Green 서해구」를 「서해담음」으로 변경(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Green 서해구로”를 “서해담음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호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제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 <u>Green 서해구로</u> ” 한다.	제8조(제호) ----- ----- -----“ <u>서해담음으로</u> ”-----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2092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4.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 개정이유

-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용차량”이라는 용어를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용차량” 용어를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참조: 재무과, 전화 032-560-4162, 팩스 032-560-27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용차량”이라는 용어를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용차량” 용어를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2호,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용차량”을 각각 “공무용 차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용차량 사고”를 “공무용 차량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을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집주소		연락처	
운전자 관 련 사 항	본 인		상대방	
	차량번호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운전자 성명	
	생년월일 및 연락처		생년월일 및 연락처	
	보험회사명		보험회사명	
사 고 관 련 사 항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내용 (사고발생 상황 및 원인)			
	사 고 피해내용	※ 물적사고 내용 (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조치사항			
	차량수리처 및 연락처			
	기타사항			
[첨부서류] 사고차량 사진 1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용차량</u> <u>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u> <u>관한 조례</u>	<u>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용 차량</u> <u>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u> <u>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u>공용차량</u> 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공무용 차량</u>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u>공용차량</u> ”이란 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의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 <u>공무용 차량</u> ”----- ----- ----- -----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제3조(구청장의 책무)----- -----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7조(지원 신청) ① 공용차량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 공무용 차량 -----

-----.

제4조(적용 범위) -----

공무용 차량-----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공무용 차량 -----

-----.

제6조(계획의 수립) -----
----- 공무용 차량 -----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 신청) ① 공무용 차량 사고-----

---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

-----.

② (현행과 같음)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2093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4.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 개정이유

- 「섬 발전 촉진법」의 개정으로 여객선이 운행되지 않는 섬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는 승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서진호의 이용자 범위를 재정립하고, 공무수행 지원과 세어도 주민의 안정적인 수송권 보장을 위하여 탑승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서진호 이용자의 범위를 재정립하고 세어도 주민 및 공무수행자 등의 수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 방문객을 수송하도록 우선순위 규정(안 제4조)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참조: 재무과, 전화 032-560-4162, 팩스 032-560-27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섬 발전 촉진법」의 개정으로 여객선이 운행되지 않는 섬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는 승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서진호의 이용자 범위를 재정립하고, 공무수행 지원과 세어도 주민의 안정적인 수송권 보장을 위하여 탑승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서진호 이용자의 범위를 재정립하고 세어도 주민 및 공무수행자 등의 수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 방문객을 수송하도록 우선순위 규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세어도를 방문하는 일반 승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승객의 수송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탑승객의 수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이용자의 범위) 정서진호를 승선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생략) 2. 부득이하게 세어도를 방문하 는 마을주민 이외의 승객 <u><신설></u> 3. (생략) <u><신설></u>	제4조(이용자의 범위) ①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u>그 밖에 세어도를 방문하는 일반 승객</u>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u>제1항제3호에 따른 승객의 수송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 호에 따른 탑승객의 수송에 지 장이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u>

관계법령 발췌

☐ 섬 발전 촉진법

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섬지역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개정 2026. 6. 2.>

②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박 이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2094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4.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 개정이유

- 우리 구에서는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관사가 없어 관사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관사 사용허가 대상이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내용 및 조항번호 정비

○ 주요내용

- 실제 운영·관리하지 않는 제7장(관사관리) 삭제
- 장(章)의 편제 정비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현행화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참조: 재무과, 전화 032-560-4162, 팩스 032-560-27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우리 구에서는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관사가 없어 관사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관사 사용허가 대상이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내용 및 조항번호 정비

2. 주요내용

- 실제 운영·관리하지 않는 제7장(관사관리) 삭제
- 장(章)의 편제 정비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현행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과 같다.

제7장(제49조부터 제60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의 위·해촉) ① <u>영 제7조의2제1항제3호</u> 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제5조(위원의 위·해촉) ① <u>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u>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심의회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심의회회의 기능) ① ----- ----- --.
<u><신설></u>	<u>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u>
1. (생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u>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u>	<u><삭제></u>
<u>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u>	<u><삭제></u>
5. · 6. (생략)	3. · 4.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u>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u>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u>「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u>

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 부·매각 대상 등) 제27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 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제7장 관사관리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 부·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과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제7장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삭 제>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삭 제>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삭 제>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삭 제>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라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임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 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

<삭 제>

<삭 제>

<삭 제>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 3. 3>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 ⑧ 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0. 5., 2016. 7. 28., 2020. 8. 5.>
1.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2.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사 현황(관사 수, 건물유형, 보유형태 등)
 2.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 관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제3항 각 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물유형(주택, 아파트 등), 준공연도 및 취득(임차)연도
 2. 규모(대지 및 건물면적 등)
 3. 보유형태(소유, 임대), 재산(임대)가격
 4.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및 지원근거(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5. 사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주민개방 등)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2095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4.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 개정이유

- 우리 구에서는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관사가 없어 관사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관사 사용허가 대상이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내용 및 조항번호 정비

○ 주요내용

- 실제 운영·관리하지 않는 관사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5조) 삭제
- 현재 규칙과 맞지 않은 별지 서식 삭제 및 정비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현행화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참조: 재무과, 전화 032-560-4162, 팩스 032-560-27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우리 구에서는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관사가 없어 관사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관사 사용허가 대상이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내용 및 조항번호 정비

2. 주요내용

- 실제 운영·관리하지 않는 관사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5조) 삭제
- 현재 규칙과 맞지 않은 별지 서식 삭제 및 정비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현행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해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공유재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2(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61조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및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 제61조의2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 제62조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36호서식
3.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첨부서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4.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제4절의 제목 “청사 및 관사관리”를 “청사관리”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3호의2(1)서식, 별지 제23호의2(2)서식,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5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앞면)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						
대상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 [예상] (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 적(㎡)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인)

_____귀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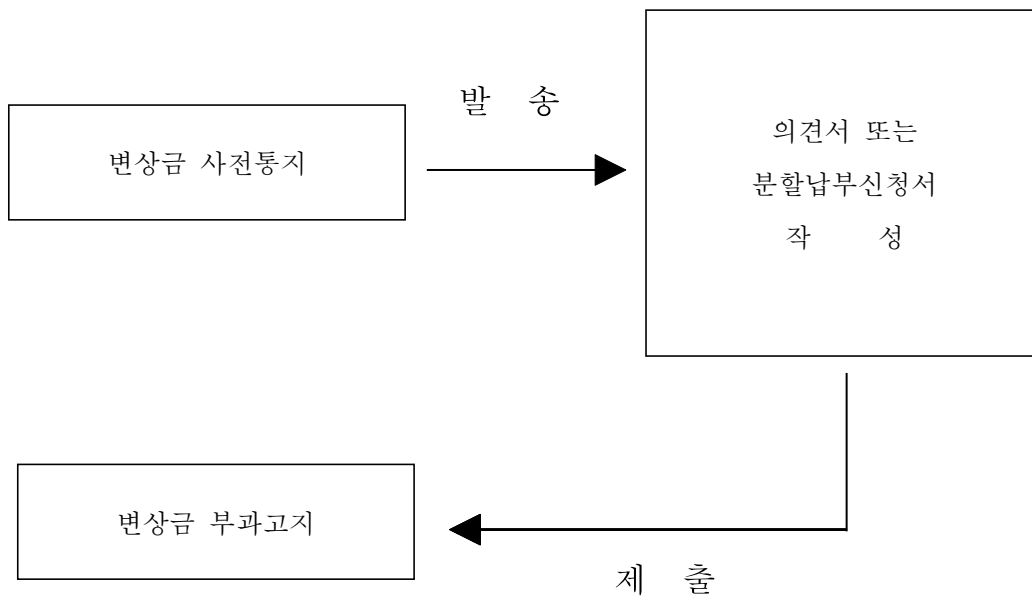
(뒷면)

※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처 리 기 관

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별지 제36호서식]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에 대 한 의 견 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항 목	통 지 내 용	의 견

<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7호서식]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소 재 지	점유면적(m ²)	부과기간	변상금(원)	유예신청사유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별지 제38호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점유 재산의 표시		분납형식	비고			
소 재 지	점유면적(m ²)					
		년 회 분납				
분할납부 신청내역						
변상금 총 액 (원)	회차	납부일	변상금(원)	연부이자(원)	합 계	비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 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공유재산 (이하 “ <u>공유재산</u> ”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u>기획재정국장</u> (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 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공유재산 (이하 “ <u>공유재산</u> ”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u>공유재산 업무 담 당 국장</u> (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제4조의2(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 승인 신청) (생략) 1. (생략) 2. 토지 <u>지</u> 용계획확인서 3. (생략)	제4조의2(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 승인 신청)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토지 <u>이</u> 용계획확인서 3.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u>변상금의 청문 등</u>) 변 상금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 (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 3호의2(2)서식에 따른다.	제33조의2(<u>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u>) 조례 제61조에 따른 변상금 <u>사전통지 및 변상금 사전통지 의 견서</u> , 제61조의2에 따른 변상금 <u>징수유예</u> , 제62조에 따른 변상금 <u>분할납부 신청에 사용하는 서식</u>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u>변상금 사전통지서</u> : 별지 제35호서식 2. <u>변상금 사전통지에 따른 의 견서</u> : 별지 제36호서식 3. <u>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u> : 별지 제37호서식(첨부서류: 변 상금 징수유예 신청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4. <u>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u> : 별지 제38호서식

현행	개정안
제4절 <u>청사 및 관사관리</u>	제4절 <u>청사관리</u>
제3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5조<삭제>
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 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별지 제23호의2(1)서식	<삭제>
별지 제23호의2(2)서식	<삭제>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신설>	<u>별지 제35호서식</u>
<신설>	<u>별지 제36호서식</u>
<신설>	<u>별지 제37호서식</u>
<신설>	<u>별지 제38호서식</u>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 7. 7., 2022. 4. 20., 2023. 8. 22.>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의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의2(변상금 징수의 유예) ①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징수를 미룰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할 변상금의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3.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에 대한 유예결정을 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할 변상금의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2. 징수유예기간

[본조신설 2022.11.7.]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7.3.29)

1. 50만원 초과: 6개월 2회 이내 분납 <신설 2024.11.4.>
2.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4.11.4.>]
3.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11.4.>]
4.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11.4.>]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사 현황(관사 수, 건물유형, 보유형태 등)
2.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 관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제3항 각 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물유형(주택, 아파트 등), 준공연도 및 취득(임차)연도
2. 규모(대지 및 건물면적 등)
3. 보유형태(소유, 임대), 재산(임대)가격
4.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및 지원근거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5. 사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주민개방 등)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2096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4.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 개정이유

-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제 운영 실태에 맞게 관리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무용 차량의 관리·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안 제2조제15호)
- 차량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정비
- 그밖에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현행 차량 관리 체계 및 차량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별표 2의 차량 기준정수를 정비함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참조: 재무과, 전화 032-560-4162, 팩스 032-560-27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제 운영 실태에 맞게 관리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무용 차량의 관리·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안 제2조제15호)
- 차량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정비
- 그밖에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관리·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현행 차량관리 체계 및 차량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별표 2의 차량 기준정수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해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원 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원 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단위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2조제2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기능·정원 및 업무량 등을 반영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별·차형별 차량의 수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제2조제7호의2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7호의2)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로 한다.

제2조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단위행정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구 본청·의회·보건소 및 동을 말한다.

제2조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차량 집중관리부서"란 단위행정기관 내 차량 운전원의 복무관리와 차량

의 유지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종전의 제12호) 중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임시차량정수배정"을 "임차차량정수배정"으로 한다.

제8조 중 "기준점수"를 "기준정수"로 한다.

제16조제1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 본청은 차량 총괄부서가 차량 집중관리부서가 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차량 집중관리부서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제18조 본문 중 "하루 전에"를 "1일 이전에 서면 또는 차량관리시스템으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같은 조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차 관리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배차 신청 및 승인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연료구입 등) 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LPG), 시엔지(CNG), 수소, 전기(이하 "연료"라 한다)는 전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 제목 "(근무시간 후 차량관리)"를 "(근무시간 외 차량관리)"로 한다.

제30조 전단 중 "구 산하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단위행정기관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신 설></u>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단위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 7. (생략)	2. "차량정수"란 조직의 기능·정원 및 업무량 등을 반영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별·차형별 차량의 수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7의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 8. (현행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9.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8. “차량보유기관”(이하“기관”이라 한다)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하는 구본청과 구의회 및 구 산하기관·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

9. (생략)

<신설>

10. ~ 11. (생략)

12. “차량관리시스템”이란 공용 차량 관리를 위하여 차량 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를 통합한 시스템(전산관리)을 말한다.

제7조(배정요청) ①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생략)

10. “단위 행정기관”(이하“기관”이라 한다)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구본청·의회·보건소 및 동을 말한다.

11. (현행 제9호와 같음)

12. “차량 집중관리부서”란 단위 행정기관 내 차량 운전원의 복무관리와 차량의 유지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 14. (현행 제10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15. ----- 공무용 차량 -----

--.

제7조(배정요청) ① -----
-----임차 차량정수배정-----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정수배정) 구청장이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기준점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기관의 장은 차량담당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생략)

제17조(차량관리방법) ① 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
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및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소관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책임을 진다.

④ ~ ⑥ (생략)

제8조(정수배정) -----

기준정수

제16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 . 이 경우 구
본청은 차량 총괄부서가 차량
집중관리부서가 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차량관리방법) ① 차량 집
중관리부서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
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밖의 차량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삭 제>

<삭 제>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후단 신설>

제20조(유류구입 등) 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3조(근무시간 후 차량관리) ①
· ② (생략)

제30조(차량직접운전) 구 산하기관의 소속공무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전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배차신청) -----

----- 1일 이전에 서면 또는 차량관리시스템으로 -----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제2차 관리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배차 신청 및 승인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연료구입 등) 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LPG), 시엔지(CNG), 수소, 전기(이하 "연료"라 한다)는 전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근무시간 외 차량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차량직접운전) 단위행정기관의 소속직원-----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8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 및 쉼형, 다목적 승용차 및 전기자동차(승용)	경승용차
구 본 청	37대	2대 (구청장· 부구청장 전용)	1대	34대	업무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적정 대수 배정
구 의회사무국	2대	1대 (의장전용)		1대	
보 건 소	4대			4대	
동 행정복지센터	1대			1대	

2. 승합용 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가.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직속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타사업용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의정활동 지원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3. 화물용 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	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단속용	주차관리단속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동행정복지센터용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그밖의 사업용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4. 특수용 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가. 청소차량은 해당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행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나.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 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그 밖의 사업용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